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8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태년 · 박정현 · 임미애
문진석 · 손명수 · 황 희
이연희 · 윤종균 · 홍기원
허 영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집객(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매출하락 등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과도한 이용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 및 경쟁 여건 또한 제약되는 상황임.

아울러 팬데믹 이후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유통 채널

다변화로 소비패턴이 변화한 환경에서 판매품목 및 구매횟수 제한은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또한 주변 경쟁국(중국, 일본)에 비해 면세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u> (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 ----- ----- ----- ----- ----- ----- 「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u>	<u><삭 제></u>

<u>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u> <u>까지 구입할 수 있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